

## 대한용접·접합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1. 연구논문과 기술논문은 용접·접합공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독창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소정의 심사양식을 이용으로 심사한다.
2. 편집이사는 접수된 논문을 3명의 심사위원에게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으면 심사완료 요구 일자 내에 소정 양식에 따라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45일 경과 시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심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논문의 내용은 공개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7. 심사위원은 논문의 게재 가부를 평가하며 논문의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부분, 투고 및 편집방침에 위배된 부분에 대하여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어야 한다.
8. 수정을 요구받은 집필자는 3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30일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학회에서 독촉하고, 45일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단 집필자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집필자는 반드시 연기 사유와 연기 일정을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기는 단 1회에 한한다.
9. 논문심사는 2심까지 할 수 있고 게재는 심사위원 2인의 “가” 판정 받은 것에 한한다.
10. 2인의 “가” 또는 “부”의 판정을 받고 나머지 1인이 심사 중인 논문은 나머지 1인의 심사결과와 관련 없이 논문심사가 완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11. 논문이 게재될 때 집필자는 1회의 교정을 보도록 한다. 이때 가필 삭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12. 투고논문의 논문심사 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

## 심사위원 심사 체크 포인트

1. 논문의 내용이 위원님의 전공 분야와 맞지 않거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즉시 학회로 반송하여 주십시오.
2. 원고가 별첨한 논문원고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심사하여 주십시오. 만약 작성지침에 어긋나 있을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원고를 학회로 보내시어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3. 논문원고의 구성이 별첨한 전체구성의 예와 같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만약 전체 구성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즉시 원고를 학회로 보내시어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4. 논문상 후보 논문으로 추천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논문 심사서에 필히 표기를 하여 주십시오.
5. 심사는 반드시 심사완료 기일을 지켜 주십시오.
6. 논문을 심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대한용접·접합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1.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 논문 심사위원 위촉, 용접용어의 수집, 정리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본 위원회의 위원은 50명 이내로 하되 학회의 편집이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으로 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4.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회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5.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본 위원회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위원장단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사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7. 간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원장단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사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8.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직위원의 1/3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86년 2월 15일부터 발효한다.
2. 본 규정은 1991년 12월 13일부터 발효한다.
3. 본 규정은 1995년 7월 26일부터 발효한다.
4. 본 규정은 2001년 1월 12일부터 발효한다.
5. 본 규정 제2조는 2003년 3월 7일부터 발효한다.